

월간  
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7년 5월호



# 목 차

## 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- 나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- 다. 금융지주회사법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투자업규정

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
- 나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

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K-OTC시장 운영규정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다.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
- 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
- 마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





**1. 법률**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- 나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- 다. 금융지주회사법

**1. 법률\***

**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(2017/4/18개정·2017/10/19시행<sup>1)2)3)</sup>)**

**1) 목적**

-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은 기존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
  - 2014년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반영하고,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순자본비율(NCR: Net Capital Ratio) 산출방식을 개편
-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과 관련하여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
  - 기존의 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,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·과징금·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

\* 해당 내용은 제정된 국회 법률안 및 국회에서 공지하는 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1) 다만, 166조의2 및 4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
- 2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166조의2 1항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, 1. 이 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166조의2 1항 3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자, 2. 이 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한 자
- 3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349조 및 428조 1항 및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, 또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443조, 446조 60호 및 6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

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(순자본비율) 변경(166조의2)

-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(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) 100분의 200에서 순자본비율(영업용순자본에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값) 100분의 150으로 변경

### □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

-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(349조 1항)
  - (기존)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
  - (개정)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
-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(428조 1항)
  - (기존) 위반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
  - (개정)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

### □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벌금 부과수준 상향(443조)

- 미공개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,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수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

### □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(449조)
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,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



**나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(2017/4/18개정·2017/10/19시행<sup>4)</sup>)**

**1) 목적**
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-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(43조 1항)
-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(43조 2항)

**다. 금융지주회사법 개정(2017/4/18개정·2017/10/19시행<sup>5)6)7)8)</sup>)**

**1) 목적**

-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  -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,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

4) 35조 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  
 5) 다만, 10조 2항, 15조의2, 15조의3, 50조 3항, 70조 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6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
 6) 57조의2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며, 64조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  
 7) 69조 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,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
 8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64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

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및 발행절차 등 마련(15조의2 및 15조의3 신설)

- 은행지주회사가 사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그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(조건부자본증권)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

#### 〈조건부자본증권〉

-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하며, 조건부자본증권에는 역(逆)전환사채, 의무전환사채(강제전환사채) 등이 있음
- 일반 전환사채(CB)의 경우 전환권이 채권자에게 있지만 역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아닌 사유 발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, 일반 채권보다 표면 금리가 높지만,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
- 2013년 말 바젤Ⅲ가 시행되면서 은행 혹은 금융지주회사는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(영구채)은 반드시 '전환' 혹은 '상각' 조건으로 발행해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- 일명 '코코본드'라고도 함

### □ 비은행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계약 해소(26조 1항, 32조 1항 및 43조의3 단서 신설)

-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이 경우 손자회사 등의 해당 지배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의무 적용을 배제

### □ 임직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(57조 1항)

- 금융지주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을 법령위반 주체에 추가하여 임직원 개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

### □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(64조 1항)

-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,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



□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제도 도입(64조 2항 신설)

-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□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(69조 1항 후단 신설)

-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

□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(72조 1항 및 2항)

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,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·제출·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(2017/4/21개정·시행)

#### 1) 목적

- 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2013년 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기 위함
- 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승수 인하(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)에 맞춰 동 상품의 미결제약정 대량 보유 보고대상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(부칙 신설)
  -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함

#### 〈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〉

-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%(~'17.4.22)
-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(~'17.10.22)
-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·신탁·일임 편입 제한(~'17.10.22)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□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기준 조정(6-29조)

- 코스피200 선물·옵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가 1/2로 인하('17.3월)됨에 따라 동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하여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및 변경 보고대상 기준을 2배 상향 조정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

- 3. 한국거래소 규정
  - 가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
  - 나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# 가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일부 개정(2017/4/21개정·2017/5/2시행)

##### 1) 목적

- 배출권시장의 주무관청 변경(환경부→부문별 주무관청)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##### 2) 주요 내용

- 주무관청의 변경 반영(2조 1항 3호, 2조 1항 3호의2)

- 관련법의 배출권 할당업체에 대한 지정·고시 권한이 “환경부장관”에서 “주무관청의 장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
  - 주무관청의 장(녹색성장법 시행령 26조 8항)이란 농림축산식품부, 산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장관을 각 지칭
  - 배출권거래법 8조, 9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의 개정내용을 반영

- 근거 고시의 명칭 변경 반영(25조 1항)

- 환경부의 “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”가 환경부의 “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”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
  -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감독에 관한 업무의 주무관청의 변경으로 관련 고시가 제·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
  -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(‘16. 6월 고시)”로 이관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## 나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(2017/4/28개정·2017/5/2시행)

### 1) 목적

- 배출권시장의 일반회원(할당 대상업체)과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에 대한 회원 정보관리의 균형을 확보하고, 배출권 시장운영의 업무절차를 구체화하여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#### 전문회원 가입시 자료 요구(4조 2항)

-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의 회원가입 신청시 거래소는 회원에게 회원의 기업개요, 재무상태 등 기초정보의 제출을 요구
  - 일반회원(할당 대상업체)은 배출권거래법 8조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 지정시 주무관청의 장(농림축산식품부, 산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 지칭)을 통하여 대상업체의 정보를 관리하지만,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은 회원 가입신청시 별도의 자료 요구가 없었음
  - 일반회원과 전문회원 간 정보관리의 균형을 확보하고,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초자료 양식(대표자, 주요주주, 설립일자, 납입자본금, 업종 및 주제품, 상시근로자 수 등)을 전문회원 가입신청시 요구

#### 기준가격 산출시 지표 배출권의 지정 명확화(14조 1항 2호 및 3호)

-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을 배출권의 종류에 따라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 별로 지표 배출권을 각각 산출하고, 협의매매 거래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제외
  - 배출권 종류별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을 각각 산출하고, 협의매매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업무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

#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K-OTC시장 운영규정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
다.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

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

마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

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#### 가. K-OTC시장 운영규정 일부개정(2017/4/18개정·시행)

##### 1) 목적

- 전문투자자용 장외시장(이하 Pro-OTC)을 신설하기 위함

##### 2) 주요 내용

- 협회는 기관투자자, 전문투자자 등 협회가 인정하는 자(이하 Pro-OTC 회원)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(이하 Pro-OTC 시스템)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(57조의2 1항 신설)
  - Pro-OTC 회원이 영 177조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등의 장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
- Pro-OTC 회원의 자격,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 Pro-OTC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(57조의2 2항 신설)

####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2017/4/27개정·2017/5/22시행)

##### 1) 목적

- 금융권역간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규제와 유사 수준으로 규제 완화하고, 한도규제 폐지 등 재산상 이익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 부과하기 위함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등에 관한 한도규제 폐지 및 공시의무 도입(2-65조 1항)

- (기존)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·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시, 인별·회사별 연간한도 준수 의무화
- (개정) 인별·회사별 제공한도 폐지 및 공시의무 신설
  -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,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10억 초과 제공·수령시 제공(수령)기간, 제공(수령)받은 자가 속한 업종, 제공·수령 목적 및 경제적 이익 합계액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

### □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(2-67조 2항 및 3항)

- (기존) 재산상 이익 제공·수령 내역을 5년 이상 기록·보관
- (개정)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재산상 이익 제공현황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
  -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 이사회 의결 의무화
  -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기준 제정·운영
  -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,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 보고

### □ 재산상 이익 제공내역 제출 동의(2-67조 5항)

- (기존) 거래상대방의 기관장이 서면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요청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
- (개정) 거래상대방 소속 임직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내역 제출

### □ 그 밖의 사항(2-68조의2 4항~9항)

-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재산상 이익 규제체계 현행 유지
  - 신용평가회사는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규제체계 유지
- 소액의 기프트콘·마일리지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 배제
  - 3만원 이하의 물품·식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·수령으로 보지 않으나,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3만원 이하의 기프트콘(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'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'에 한함) 및 거래실적에 연동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·마일리지도 재산상 이익 규제 대상에서 제외



#### 다.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 제정(2017/4/27제정<sup>1)</sup>)

##### 1) 목적

- 협회에서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원활한 업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
  - 금융위는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완화 방안을 발표('16.4.27)하고 관련 법령 개정 진행

##### 2) 주요 내용

- (적용 펀드) 집합투자계약 상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공모펀드(3조)
  - 다만, 펀드의 특성상 성과보수 수취가 부적정한 펀드 제외
    - ELF(투자수익 사전 확정), MMF(단기자금 운용), 전환형 펀드, ETF·Index펀드(지표 추종), 동일펀드 100% 투자 재간접펀드(FoF) 및 100% 운용위탁 펀드(운용 능력과 무관)
  
- (적용 원칙) 일반펀드에 비해 낮은 운용보수율 적용, 성과보수 상한을 초과수익 이내로 설정(4조)
  - 초과수익이란 기준수익률(절대수익률 또는 BM지수+ $\alpha$ )을 초과하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전
    - 성과보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위험추구 통제 및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부과
  
- (성과보수 유형) 펀드 유형(상장·비상장)에 따라 선택(5조)
  - (최고수위형) 상장 펀드에 적용
    - 결산일의 수정기준가격(펀드의 누적 수익률 관리를 위해 산정된 기준가격)이 종전 성과보수 수취 시점의 수정기준가격(High Watermark) 또는 HWM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
  - (선형) 비상장 펀드에 적용
    -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따른 환매대금 산정결과 초과수익 발생시 성과보수 수취
    - 절대수익률 또는 상대수익률(BM지수+ $\alpha$ ) 2가지 방식 가능

1)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공고 2016-199호('16.6.27) 및 2016-200호('16.6.27)에 따른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 일 이후 설정·설립되는 성과보수 공모펀드에 대하여 적용



### 펀드 유형별 사용 가능한 성과보수 유형

구분	상장(환매금지형) 펀드	비상장(개방형) 펀드
유형별 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산정 기준) 펀드 수익률</li> <li>○ (수취 시점) 결산시점(반기 또는 연간)</li> <li>○ (산정 업무)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산정 기준) 투자자별 수익률</li> <li>○ (수취 시점) 환매시점</li> <li>○ (산정 업무) 판매회사에 위탁</li> </ul>

(기준 설정) BM지수, 절대수익률 및 성과보수율 등은 운용사가 자율 결정(6조, 7조)

- 세부 내용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(15조 1항)

(초과수익 산정) 펀드 유형별 초과수익 산정 방식 규정(10조)

- (상장 펀드) HWM 또는 HWM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초과하는 수정기준가격에 펀드의 총 좌수를 곱하여 산정
- (비상장 펀드) 환매금액과 기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금 간 차액

(성과보수 산정) 초과수익에 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산정(11조)

- 성과보수율은 운용사가 자율 결정
  - (참고) 한국형 헤지펀드는 통상 15% 수준의 성과보수율 적용

### 초과수익 및 성과보수 산정 예시

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성과보수율: 초과수익의 15%</li> <li>② 보수 및 수수료 등: "0"</li> </ul>
상장 펀드(환매금지형)	(*17.4.1) 펀드 설정 100억원(기준가 1,000원)  [Case I : 절대수익률 미설정] (*17.10.1) 수정기준가 1,100원 → 초과수익 10억원 $[(1,100-1,000) \div 1,000 \times 100\text{억원}]$ 성과보수 1.5억원(10억원 $\times$ 15%)  [Case II : 절대수익률 5% 설정] (*17.10.1) 수정기준가 1,100원 → 초과수익 5억원 $[(1,100-1,000 \times (1+0.05)) \div 1,000 \times 100\text{억원}]$ 성과보수 0.75억원(5억원 $\times$ 15%)



### 초과수익 및 성과보수 산정 예시 (계속)

비상장 펀드(개방형)	<p>[Case1] 투자원금 1억원, 환매금액 1.1억원          → 초과수익 500만원[1.1억원-1억원×(1+0.05)]          성과보수 75만원(500만원×15%)</p> <p>[Case2] 투자원금 1억원, 환매금액 1.04억원          → 초과수익 0원[1.04억원-1억원×(1+0.05)=-100만원]          성과보수 없음(초과수익 0)          * 기준수익률: 5% 적용</p>
-------------	--

□ (업무 위탁) 운용사는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(상장 펀드) 또는 판매회사(비상장 펀드)에 위탁(12조, 13조)

- 성과보수는 운용사에 귀속되는 금전으로 운용사가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, 관련 정보의 부재 등으로 동 업무의 위탁 불가피
  -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초과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운용사에 지급
  -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성과보수 산정내역 보관·관리 및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

□ (투자자 보호) 성과보수 관련 사항 및 그 위험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(15조)

- 상장 펀드의 경우 사전 공시(성과보수 발생 가능성, 예상금액 등) 및 사후 공시(성과보수 산출내역, 인출금액 등) 의무화

### 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일부개정(2017/4/28개정·시행)

#### 1) 목적

-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, 관련기준,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불가하여, 모범규준을 정비하여 투자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
  - 협회 ‘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’에서는 임직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, 관련기준,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

## 2) 주요 내용

- (투자자 인식제고 실질화)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방지교육(집합, 전달, 화상 등)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
  - 이에 따라, 투자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, HTS 등을 통하여 주문착오방지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대체하고, 다만, 임직원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관련 교육의무는 현행 유지

### 마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일부개정(2017/4/28개정·시행)

#### 1) 목적

- 펀드의 해외채권 투자규모가 증가 추세인데 현행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외화표시 채권 평가시 적용할 소수점 처리 방법은 있으나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어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만들기 위함
  - 주(主)·부(副) 사무관리사간 펀드 회계처리, 기준가격 검증 업무 등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화표시 기준가격 펀드의 판매 활성화에 장애 요인
-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체계 개편 반영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가이드라인 내 '집합투자회계 세부처리'에 외화표시 채무증권의 평가시 소수점 자리 수 적용 방식 추가
  -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하되, 제공되는 소수점 자리 수가 다른 경우 그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
- 집합투자회계 세부처리 상 소수점 자리 수 처리 적용례 대상을 '유가증권 등'에서 '채무증권'으로 변경
  - 세부처리 사례를 그 제정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을 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
- '사모투자전문회사'를 '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'로 변경 반영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